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602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대규, 이용훈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9. 26.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22. 1.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2022. 1. 27. 접수 제63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20. 1. 17.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D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 2) 원고는 D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0. 4. 7. “D은 원고에게 20,374,917원 및 그 중 8,447,54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20. 4. 24.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98208).

나. D과 피고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D의 아버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8. 27. 사망하였고, D은 망인의 재산을 어머니인 피고 등과 공동상속하였다(D의 법정상속분 2/9).
- 2) 그런데 D은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과, 피고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재산상태

- 1) 이 사건 협의 당시 D은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 외에 아래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원금 합계 51,388,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순번	적극재산 내역	가액(원)
1	경남 창원군 G 전 826㎡ 중 1/3 지분	5,589,266
2	경남 창원군 H 전 1,478㎡ 중 1/3 지분	2,309,806
3	경남 창원군 I 답 1,531㎡ 중 1/3 지분	10,512,866
합계		18,411,938

2) 한편 이 사건 협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합계 181,364,009원이고, 이 사건 협의 이전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5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J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권은 당초 대출일인 2014. 12. 5.로부터 5년이 지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은 2014. 12. 5. E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원리금을 2018. 12. 5.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런데 D은 2015. 5. 4.까지 분할 상환의무를 이행하다가, 이후 그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③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3. 25. D을 상대로 앞서 본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D이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은 늦어도 2012년경부터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2013. 6. 28.경 피고의 집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피고와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는 점(위 지급명령정본과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도 피고가 수령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2/9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별지

1. 대구 달성군 K 전 764㎡ 중 164/231 지분
2. 대구 달성군 L 전 1,293㎡
3. 대구 달성군 M 묘지 1,597㎡. 끝.

